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단50527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단체

소송대리인 B, C, D, E, F

피고G

변론 종결2020. 4. 23.

판결 선고2020. 5. 21.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88,813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11.부터 1999.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및 소외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1945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1. 10. "피고 및 H은 각자 원고에게 40,088,813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11.부터 1999.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10. 2. 9.자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88,8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8. 17.경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2374호 및 2015하면2376호로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2. 1.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2017. 2. 16. 확정된 사실, 위 절차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자목록에 소외 I (유)자산권리자의 대출채권 42,935,765원만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가 위 면책 당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알지 못하고 실수로 채권자 목록에 원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원인이 교통 사고 이후 무단전출 직권 말소, 직권거주불명등록 등 수년간 주거가 불명한 상태를 유지하여 법원의 송달을 불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2284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J단체, K, L, M 계좌를 압류하여 피고의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되,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9858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존재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 목록에서 이를 누락시킨 것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아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소외 N가 1993. 11. 1. 22:00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합자회사 ○ 소유의 P를 원주시 Q 소재 R 한약방앞 복개도로 주차장에서 우산동쪽에서 단계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때마침 우산동쪽에서 단계사거리쪽으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S 베스타 승합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위 화물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한 사고로 위 승합차량에 탑승한 소외 망 T가 사망하고 소외 U 외 3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자로서 T의 유족들 및 부상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에 피고의 일부 과실이 있음을 들어 그 부담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9가합23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1999. 10. 22. 선고받은 판결상의 채권이다. 위 판결에서 피고의 과실은 10% 인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판결상의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1945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2010. 1. 10.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0. 2. 9.자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다.

(3) 피고의 주민등록은 2004. 9. 24., 2009. 3. 23., 각 무단전출직권말소, 2010. 4. 15., 2016. 3. 15. 각 직권거주불명등록 되었다.

(4)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19456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2010. 12. 9.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22849호로 피고가 J단체,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V, 주식회사 M에 대하여 가지는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DOCUMENT: 피고1. 은행별 계좌 현황 표(이미지 생략)

(5)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J단체, K, L, V, M상의 피고 계좌는 위와 같이 대부분 거래 사실이 없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들이다. 원고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피고의 금융거래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6) 원고는 2014. 11. 4.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양주시 AH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독촉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피고의 과실 10%가 인정된 것에 기초하여 인정된 것으로,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여 1999. 10. 22.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이래 위 면책결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통지가 도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면책신청 당시 피고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자의 수, 채권액, 채권의 내역, 누락된 원고의 채권액, 그때까지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피고에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쳐 피고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위 대법원 2015다28173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회기